



해외석유정보

본 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회사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 영국의 석유소매 판매 경쟁실태

최근 일본석유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영국석유소매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 ①지난 8년간 수퍼의 석유제품판매비율은 5%에서 23%로 늘어나고 ②수퍼마켓과 석유회사는 앞으로도 경쟁이 활발해지며 ③시장은 경쟁적이므로 공정거래청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낮은 석유소매 가격은 석유기업과 수퍼의 경쟁에 따른 결과이므로 독립계업자를 떠돌린다는 증거는 찾아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영국 휘발유소매가격은 지난 1월 69.7펜스(1330원) / l로 이 중 세금은 59.7펜스(1139원)이며 세금비중은 휘발유가격중 85%를 차지해 유럽국가들 가운데 세금과 판매가격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석유업계는 휘발유 세금비중이 85%나 차지한다는 내용의 전단 1,500만장을 배포했다. 세금은 리터당 매년 약 4.5펜스(86원) 정도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유소

매입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이 줄어들어 1998년 4/4분기에는 수퍼와 메이저석유회사간 치열한 판매경쟁 결과, 수익률은 제로였다. 주유소 수익중 50% 이상이 식품과 기타 유향(油外) 상품판매인 경우가 늘고 있어 편의점병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14,000여개의 주유소가 있으나 이중 약 53%는 독립계로 매출액 감소와 저마진으로 경영이 부실해 편의점병설 등의 사업 확장이 여의치 않아 1998년에 450개를 비롯해 최근 3년간 2,600여개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휘발유수요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수퍼의 휘발유판매량은 1개 주유소당 영국전체평균 약 다섯배이며 매년 약 50개가 새로 생기고 있다. ASDA라는 수퍼는 다른 곳보다 3%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 Elf, BP, Amoco, Esso, Shell 등은 최근 대형수퍼와 '경쟁관계'에서 '제휴관계'로 전환, 상호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경쟁이 치열해질 지 시황이 안정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간석유정책, '99.5.15>

● 대만의 에너지 및 석유 사업 현황

1차에너지수요

대만은 에너지자원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석유는 1차에너지수요중 49.9%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은 에너지수요중 29.9%를 차지하고 원자력발전 12.8%, 천연가스 6.4%, 수력 1.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정부경제부(산업자원부에 해당)의 에너지정책(1996년전망)에 따르면 현재 최우선 사항은 에너지관련 사업체의 자유화·민영화와 발전소·정유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촉진이다.

천연가스

대만은 국영 CPC (중국석유공사)가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수입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1997년 LNG수입은 323만톤인데 1995년에 연간 50만톤의 비율로 마리나에서 최초로 수입, 현재 인도네시아가 주공급선이다. 현재 유일한 수입지지는 고미지구(高尾地區) Yungan으로 저장능력이 450만톤이다. 대만의 LNG수요는 2010년까지 1,300만톤, 2020년까지 1,6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만정부는 LNG 수입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1차에너지수요

(석유환산 : 100만t)

	수 요		구성비(%)	
	1996년	1997년	1996년	1997년
석 유	35.3	36.8	51.1	49.9
천연가스	4.0	4.7	5.8	6.4
석 탄	19.3	22.0	27.9	29.9
원 자 력	9.7	9.4	14.0	12.8
수 력	0.8	0.8	1.2	1.0
합 계	69.1	73.7	100.0	0.8

(BP통계 : 1998년)

CPC는 지난해 6월, 苗栗縣中央部에 대규모가스전과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천연가스매장지역은 3억 1,000만m³, No.8 유정이며 원유매장량이 3만 8,000kl로 과거 10년~20년간 탐사한 단일유정으로는 최대규모이다.

석탄

석탄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산업과 발전용(1996년 32%)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총수요중 99.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공급원은 호주 35%, 인도네시아 21%, 남아프리카 17%, 중국 15%, 미국 8%, 캐나다 3%이다(1996년 기준).

중국석유공사 (CPC)의 존재

대만국영석유회사 CPC(중국석유공사)는 대만의 탐사, 석유정제, 저장, 수송, 판매까지 전부문에 걸친 독점사업체이나 정부는 대기업인 대만프라스틱(FPC)그룹에 민간 자본에 의한 석유와 석유화학사에 대한 진출을 허용해 FPC는 2000년까지 대만 석유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석유시장은 최근 치열한 판매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만정부가 민간자본에 대하여 ①석유정제, ②수출입, ③판매사업에 대한 진출을 승인했기 때문인데 석유시장의 완전개방은 이르면 2000년중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석유공사(CPC)는 종업원수 18,900명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사업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CPC의 민영화계획은 최근 4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①새로운 석유업법 제정 지연 ②경제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주가 하락 ③종업원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신석유업법이 실시되어 당초안대로 진행될 경우 대만에너지사업의 완전자유화는 2000년 7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탐사, 천연가스, 정제, 판매, 석유화학, LPG사업등도 재편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CPC는 1946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현재 본거지는 대만이며 남부 高尾와 북부 桃園에 총77만b/d의 원유처리시설과 약 100만톤/년의 에틸렌설비를 보유

하고 있으나 정제설비는 비효율적이며 FPC가 2000년에는 45만b/d 규모의 원유처리설비(1999년중에 15만b/d)를 완성할 계획이어서 CPC와 한차례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원유개발

대만의 원유매장량은 1999년 1월1일 현재(OGJ誌) 400만배럴, 원유가 산출되는 유정은 약 75개, 산출규모는 1,000b/d으로 적은 량이다. 천연가스매장량은 2.7조ft³이다.

CPC의 해외탐사진출광구

진출국	광구	출자	주관사
에콰도르	Block16	31%	YFP
	Block17	30%	ELF
카자흐스탄	Tenge	33.25%	TDL
인도네시아	Sanga Sanga	16.7%	VICO
	Runtu	20%	Lasmo
	Peudada	32.5%	OPIC
미국	Three joint venture	17.25%	Philips, NRG, IP
UAE	Mubarek	24%	BGOI

원유탐사는 거의 성과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대만해협 및 홍콩연안에 20억배럴의 원유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공동탐사를 협의중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진척은 없다.

석유정제

대만의 원유처리현황은 현재 CPC의 정유공장에서만 이루어지며 高尾, 大林埔, 桃園 등 3개 정유공장의 총 정제능력은 77만b/d이다. 이외에 대만은 열분해설비 1.5만b/d, 증류분해설비 5만b/d, 등경유탈황 13만b/d, 중유탈황설

비 13.5만b/d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경유, 중유의 황함량규제를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1998년에는 경유의 황함량 상한을 0.1%에서 0.05%로 낮추고 중유의 황함량규제도 1997년에 臺灣, 臺中, 高尾 3개도시에서 0.5%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휘발유의 완전무연화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대만은 높은 휘발유수요에 비해 고유황중유의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압증류시설의 가동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중질유분해장치 등 2차시설의 가동률이 높아 FCC 등은 풀가동중이다. 또한 환경기준준수를 위해 대규모공해방지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대기오염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업을 감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른 중간유분 생산능력 부족으로 휘발유수요의 약 40%는 수입에 의존하며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도 충분하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 아래 대만 FPC그룹이 雲林縣麥寮에 건설 중인 에틸렌설비(대만6위, 능력 45만t/년)가 1998년 중순에 완공됐고 올해 2월 현재 가동률은 80%이다. CPC로서는 정부의 석유업자유화방침으로 판매업이 자유화되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격화돼 어려운 경영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대만의 석유정제능력과 증설계획

(단위 : b/d)

회사명	공장	처리능력	증설계획	완성
중국석유	高雄	270,000		
중국석유	大林埔	300,000		
중국석유	桃園	200,000		
중국석유	미정		200,000	미정
대만프라스텍	雲林		450,000	
東帝士	미정		150,000	미정
東帝士	미정		150,000	미정
	합계	770,000	950,000	

석유제품수요

대만의 석유제품수요는 벙커중유판매를 포함해 약 80만 b/d로 1998년 1월~9월은 82만b/d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경제부에너지위원회의 예측(1998년초기시점)에 따른 1998년~2010년의 석유제품수요는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FPC의 석유화학제품원료로서 나프타수요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대만의 석유제품수요

(단위: 만b/d)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42	55	57	59	63	67	73	73	76

(BP통계 : 1998년)

대만의 국영CPC는 석유제품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리포메이트 ②저유황중유 ③LPG를 수입하고 있다. 대만의 판매제품중 자동차휘발유, 중유, 디젤연료유가 정제제품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1997년의 실적은 자동차휘발유가 36%, 중유가 19%, 디젤연료유가 16%이다.

대만의 주유소는 현재 1,712개이며 이 중, CPC가 590개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LPG연료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여 LPG충전소를 臺北, 高尾, 臺中 3개지역에 건설하고 있다.

석유제품수입

대만정부경제부는 지난 1999년 1월30일, 국영CPC가 독점수입하던 LPG, 제트연료유, 중유등 3개제품과 LNG수입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그외의 제품수입은 2000년 7월 하류부문자유화가 완전 승인될 경우에 한해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대만정부는 지난 1월21일 대만석유회사의 연간석유제품수입량을 생산량의 50%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민간석유제품수입회사는 ①저장시설을 건설, 최저 5만kl를 보유할 것 ②연간예상판매량 60일분 보유, LPG수입업자는 25일분 이상 비축할 것이라는 규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FPC가 1999년 가을에 15만b/d, 2000년 3월 25만b/d, 9월에 15만b/d로 원료처리능력을 각각 늘리기 때문에 제품수입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제트연료유의 대만내 판매는 CPC에 의해 기간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판매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LPG의 신규수입, 판매업자는 최저저장량이 1만kl 내지 1만kl이상, 또한 연간예정판매량의 25일분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쨌든 2000년 7월1일 이후 휘발유, 경유의 수입도 완전자유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심의중인 석유업법의 내용으로 ①석유시장의 규제추정 ②국영CPC의 민영화가 주요내용이다.

오끼나와(沖繩)에 대한 투자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끼나와의와의 경제교류를 진전시키고 있다. 경제교류의 매력은 메이드 인 제팬이라는 브랜드와 싼 공업용지이나 노동력확보가 과제이다. 대만은 1996년경부터 오끼나와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어 이등휘(李登輝) 총통이 규제완화등을 조건으로 「10억달러규모의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대만측은 오끼나와에 대해 ①홍콩과 같은 자유항구로 할 것 ②대만제조업이 오끼나와에서 가공, 일본제품으로 수출 ③대만과 중국기를 계양한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④현재 홍콩과 같은 자유국제도시기능을 정비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홍콩과 같이 되는 것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대만측은 기업진출을 위해 법인세인하, 규제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오끼나와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진흥을 공약했다. 일본석유업으로서는 오끼나와에 대한 대만 자본의 석유관련사업진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

대만정부는 CPC의 독점분야였던 정제부문에 신규참가를 허용해 FPC의 대형정유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CPC 민영화를 위한 법안정비를 서둘러 경쟁력강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은 2001년까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전제로 CPC를 민영화할 방침이나 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대만 석유제품시장은 현재 82.5만b/d 규모로 CPC의 정유공장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FPC의 정유공장(원유처리능력 15만b/d)이 오는 가을 증설되고, 2000년 3월 15만b/d, 9월 15만b/d로 각각 증설되어 45만b/d까지 확대된다. 해외분석가에 따르면 2000년말까지는 5.5만b/d 이상의 석유제품(주로 휘발유와 경유)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PC는 남은 경유와 제트연료유의 중국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만정부의 대중국직접수출금지로 인해 싱가포르 내지 홍콩을 경유하여 수출하고 있다. FPC의 경유생산량 13.5만b/d중 10만b/d는 잉여물량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와의 경쟁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석유수요 증가도 당분간 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PC의 원유처리능력은 석유화학시설과 함께 재검토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간석유정책, '99.5.15〉



이라크의 경제현황과 석유산업 전망

걸프전쟁 발발후 9년이 경과한 후에도 후세인정권에는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슬람 수니파에 의한 폭동, 99년 4월부터 달러당 2,000이라크디나르를 넘는 통화의 폭락도 발생하고 있어 이라크의 권력체제도 불안한 실정이다.

이라크는 동북부는 터키와 이란, 남서부는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쿠웨이트에 인접해 있고, 남부는 페르시아만에 면하고 있다. 면적은 43만8천km²이고 인구는 2,240만명(97년10월), 인종구성은 아랍인 80%, 쿠르드인 20%이다. 소수민족으로는 페르시아인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도가 95%(시아파 54%, 수니파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독교와 유대교도이다.

군림하는 사담 후세인정권

79년 7월이후 사담후세인이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후세인대통령은 혁명지도평의회위원장, 군최고사령관등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쟁후에는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생안정과 치안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반대세력을 숙청등으로 제거했고 비밀경찰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권력을 강화해 왔다. 따라서 후세인대통령에 대항할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95년 10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직접국민투표에서 후세인은 99.96%라는 절대적 지지로 2002년 10월까지 향후 7년간 대통령에 재선임되었다.

정치적으로는 후세인대통령과 함께 혁명지도평의회(RCC)가 모든 국무사항을 토의하고 바스당이 일당독재체제를 이루고 있다. 바스당(당원 약 10만명)의 정식명칭은 아랍사회주의부흥당으로 이라크의 국가권력이 바스당

에 집중되고 있다. 96년 3월에는 7년만에 이라크국민의회
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160명 후보전원이 당선되었다. 혁
명지도평의회도 전원이 바스당원이다. 바스당의 서기장은
후세인대통령이 겸임하고 있다.

걸프전쟁후 경제제재

90년 8월 2일 이라크는 쿠웨이트 영토를 침공했다. 이
에 대하여 UN은 8월 6일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결의
(UN안보리결의 661호)를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이라크
에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결의(UN안보리결의 678호)가
11월 29일 채택되어, 91년 1월 17일 다국적군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2월 28일 다국적군
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걸프전쟁 종료후 이라크정권
은 대량파괴무기 파괴, 쿠웨이트와의 국경확정등을 정한
걸프전쟁정전결의(UN안보리결의 687호)를 받아들여 이
라크국내의 북위36도이북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그후 이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한다고 선언
하였다.

상기의 경제제재는 90년대 내내 이라크경제를 곤궁하게
하여 고인플레이 생활물자부족 영양부족과 악몽부족으로 국
민생활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후세인대통령은
94년 10월 경제제재에 의한 국내의 참상을 국제여론에 호
소하기 위해 이라크공화국군을 쿠웨이트국경에 남하시켰
다. 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군은 즉시 군대를 파견
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고 유가도 상승하였다. 그러
나 이라크군이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
로 판단, 철수함으로써 사태는 수습되었다.

UN의 석유금수해제

걸프전쟁후 UN경제제재로 말미암아 이라크의 국민생활
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95년 4월 UN은 인도지
원목적으로 한정하여 이라크원유의 금수를 부분적으로 해
제하는 결의 986호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이라크산석유

및 석유제품을 90일마다 총액 1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을 허용했는데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가격과 수출루트(대부분은 터어키 경유
파이프라인, 페르시아만의 미나 알 바쿠르기지에서 수출도
허용), 지불방법을 허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석
유대금은 UN이 개설한 구좌에 보관되고 용도는 걸프전쟁
의 배상기금과 UN경비, 인도적원조자금에 국한한다.유효
기간은 180일이고 그후 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이라크는 조건부 부분해제는 주권침해로
간주 반발하여 UN결의안을 거부하였으나 국민생활의 악
화로 이라크는 96년 11월 UN결의안을 받아들여 96년12
월10일부터 식량과 생활필수물자의 구입을 위한 원유수출
이 수출중단 6년반만에 재개되었다.

그후 97년 6월 UN안보리는 원유금수부분해제문제에
대하여 180일을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
고 99년 5월 25일에는 6차연장이 시행되어 11월 20일까지
53억달러의 수출이 허용되었다.

대량파괴무기 사찰문제

97년10월 이라크가 UN대량파괴무기폐기특별위원회
(UNSCOM)의 사찰을 거부하여 이라크정세는 다시 악화
되었다. 러시아의 외교중개로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유지
하였으나 98년 다시 이라크가 UN의 대량파괴무기의 무조
건사찰을 거부하여 미국과 영국은 무력사용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이라크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와 프랑스는 향후 이라크에서 원유이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하였으나 그후 후세인대통
령이 코피에넌UN사무총장과 사찰수용을 합의하여 무력사
용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98년 10월 이라크가 다시 UNSCOM의 사찰전
면거부를 표명하여 98년 12월 미국과 영국은 공습을 감행
하여 99년 6월시점까지도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도 미국과 영국에 양보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전투는 지구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의 사찰문제에 대해서는 UN내부에서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UNSCOM을 대항한 조사사찰감시위원회(UNCIIM) 설치 검토되고 있다.

이라크외교의 기본은 아랍사회주의이다. 그러나 89년에 사우디와 체결된 상호불가침조약도 사우디의 이라크에 대한 불신감의 증폭으로 그 의의는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는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었으나 걸프전쟁시 다국적군측과 이라크측으로 양분된 아랍국가들의 자세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평화의 중개역으로 활약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99년 2월에 서거한 것은 향후 이라크와 중동국가들간 관계개선에 있어 아쉬움이 크다. 서방국가중에는 프랑스가 이라크와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부를 바그다드에 설치했다. 95년에는 프랑스 석유회사인 Total사와 석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라크경제의 혼조

이라크경제에 대해서는 걸프위기발생과 그후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89년이후 정부공식통계는 없다. 그러나 91년이후 석유관련시설 파괴와 원유수출 금지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96년 12월부터 석유수출이 재개되어 97년의 GDP성장율은 석유생산의 호조로 20%이상 대폭적인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98년은 식량조달을 위한 원유수출 확대에 따라 원유수출량이 반년동안 5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에 석유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전면적인 경제제재의 해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는 걸프전쟁후 심각한 물자부족으로 91년은 년평균 500%, 92년에는 350%를 기록하는 고인플레이가 발생되었다. 그후 인플레이가 약간 진정되었으나 94년 물가상승율은

다시 300%에 달했고 95년은 250%로 추정되고 있다. 이라크정부는 재정지수의 악화에 따라 96년 1월부터 전화요금 전차 버스요금등 공공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다. 97년과 98년에도 연평균물가상승율은 200%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대외채무는 아랍국가들로부터의 원조와 서방국가들에 대한 채무, 그리고 구소련등에 대한 군사적 채무, 걸프전쟁에서의 손해배상액을 합치면 대외채무총액은 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업화의 방향은 수출지향형제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의 GDP구성비는 10%를 밑돌고 있어 석유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업종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화학비료, 시멘트이다. 또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경제제재로 이라크의 제조업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라크의 석유산업

99년 1월 1일 현재 이라크의 원유확인매장량은 1,125억 배럴이고 가채년수는 145년으로 전세계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산유국이다. 98년의 원유생산량은 211만b/d로 세계제어 3.2%를 점하고 있다. 원유생산량은 이란과의 전쟁이전인 200만b/d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쟁후에는 100만b/d이하로 떨어졌다. 그후 원유생산은 회복되어 쿠웨이트침공이전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은 330만b/d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걸프전쟁종결후에는 전쟁에 의한 생산능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경제제재로 생산량은 52만b/d까지 떨어졌다. 걸프전쟁이후 석유수출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 대한 수출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요르단이 걸프전쟁시 이라크를 지지하여 사우디로부터의 원유공급이 중단되어 이라크로부터 대체수입했기 때문에 UN으로부터는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

99년초 원유생산량은 270만b/d, 원유생산능력은 생산시설의 복구로 300만b/d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에는 300만b/d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이외에 주요 수출산업이 없는 이라크의 경제로 볼 때 원유생산의 증가에 따른 석유수입이 증대가 향후 이라크 경제부흥에 필수적인 요인이 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회사와 유럽/미국의 메이저는 UN의 경제제재 해제를 대비하여 이라크에서 석유개발이권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UN도 99년 4월 이라크의 원유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권고했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금수의 일부 해제 이후 터어키경

유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파이프라인은 이라크북부에서 북상하여 터어키동부를 가로질러 지중해연안의 세이한항에 이르고 있고 수송능력은 180만b/d이며, 원유구매국은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등이다. 이라크는 원유수출의 해금에 따라 98년에 80억달러를 초과하는 석유수입을 올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il Report, '99. 6. 7〉



21세기 일본의 석유정책

-직접규제에서 정보관리로-

석유업법체제 폐막

일본의 석유정책에 대한 개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다.

통산성은 1987년 여름 석유업계의 규제완화 실행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일련의 규제완화정책에 착수한뒤 1996년 4월에는 특석법을 폐지해 석유제품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그리고 석유제품수입을 정제업자에 한정된 특석법은 석유제품가격 수준 및 체계의 국제화를 저해하고 있어 동법 폐지를 결정하고 특석법폐지후 5년동안 석유정책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7년11월 석유심의 회석유부회에 기본정책소위원회와 정제문제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석유업법의 핵심인 석유정제업법 및 수급조정등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중간보고를 작성하였다.

「석유업법에 근거한 사업허가와 설비허가등 수급조정규제는 특석법폐지와 제품수출의 실질자유화에 따라 그 존재의의를 상실해 각사업자는 국제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직

면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조정규제등은 정제업자들의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21세기는 석유업법 대신에 국제석유시장을 전제로 한 석유정책이 바람직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긴급시 대응이나 자주개발등 본연의 자세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제도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2001년을 목표로 착실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석유심의회석유부회에「석유비축/긴급시대책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석유업법폐지후의 석유정책/석유행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지난 4월23일 「보고서 골자」를 발표하였다. 그후 석유업법의 폐지는 개정의 형태로 긴급시 대응과 석유산업의 정보수집에 관한 신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내년 5월에서 6월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그후에 관계 법령과 시행규칙등을 정비하고 2001년 4월에는 석유업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7월 시행 이후 약38년간 지속된 석유업법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정책의 중심은 정보수집

석유비축/긴급시대책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일본석유정책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경쟁격화와 강화되는 국내외시장의 연계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창의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 촉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석유정책의 기축인 석유업법의 수급조정규제등의 규정은 폐지한다.

둘째, 긴급시 대응도 가능한 시장기능을 유지/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긴급시 초기단계는 시장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회피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속/정확한 정보수집/제공과 아울러 석유의 양적확보와 공황사태 방지등의 관점에서 석유비축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긴급시 초기단계부터 기동적으로 방출한다.

석유수급적정화법등의 법적조치도 필요하나 시장기능을 가능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평시의 석유행정〉

긴급시 대응을 위해서는 평시부터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정보수집은 지금까지 석유업법의 주요 규제인 수급조정규제가 폐지된 이후에 일상적인 석유행정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첫째, 국제적 수급동향에 관한 정보

산유국의 정치상황 등 석유공급 동향이나 국제 석유가격/수급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평시부터 IEA 등의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둘째, 국내수급에 관한 정보

① 수급실적 파악

원유/석유제품의 수입/생산/판매/재고 정보는 월별로 파악한다. 긴급시에는 정보수집의 빈도와 속도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② 석유수급전망 파악

석유업법의 수급조정규제 폐지와 함께 석유공급계획을 폐지한다. 석유수요전망은 종전과 같이 수급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수요구조 파악과 석유비축목표책정의 기초정보로서 필요하다.

③ 긴급시 생산/수입/재고 전망 파악

석유업법의 수급조정규제폐지에 따라 석유생산계획의 신고/변동신고, 외환법에 의한 수출승인제도는 폐지한다. 그러나 긴급시는 IEA에 대하여 익월, 익익월의 수출입과 재고등의 전망을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산전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다.

④ 석유긴급시 네트워크의 효과적 활용

석유제품수입 자유화로 신규수입업자를 이 네트워크에 편입하고 정보수집의 항목과 빈도에 대하여 수정한다.

셋째, 설비정보의 파악

정제설비나 저장시설에 대하여도 계속 파악한다.

넷째, 가격정보 파악

평시부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등에 대한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다.

다섯째, 사업자의 확실한 파악

석유업법의 수급조정규제 폐지에 따라 사업자의 허가제/신고제에 관한 규정은 수급조종의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평시 정보수집의 대상과 석유비축등의 주체, 긴급시 개별조치실시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한다.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는 제1차공급업자로서 일본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8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향후에도 석유공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정제업의 신규진출자는 그 사업주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비축의무이행 등 최저한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가능한 체계를 정비한다.

② 석유수입업자

향후 제품수입이 확대되어 제1차공급업자로서의 수입업자의 역할도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석유정제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비축의무이행 가능성등 최저한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한다.

③ 석유판매업자

석유판매업은 석유 소비자에 대한 유통에 관련된 사업으로 향후 석유판매업에 진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업자에 대

해서 사업주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한다.

여섯째, 정보의 효과적 활용

수집된 정보는 평시부터 분석하고 매스컴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폭넓게 국민/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일곱째, 정보수집의 국제적 제휴

정보수집의 관점에서 IEA, APEC등 국제기구와 제휴를 도모한다.

<긴급시 대응조치>

이상과 같은 형태로 평시에는 정보수집/분석/정리를 중심으로 석유산업/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긴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첫째, 정보의 수집/제휴

긴급사태가 국내외 석유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수집/제공한다. 또한 석유생산/판매/재고 실적을 전망하고 가격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제공한다.

둘째, 석유비축방출

긴급시 초기단계에서 공황상태와 가수요를 방지하고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최후 수단인 초기단계에서도 기능적으로 비축을 방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확보조치

비축방출등으로 최대한 국내석유공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제업자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에서 석유제품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를 강구해도 공급이 심각해 지면 석유수급적정화법의 발동을 고려한다.

넷째, 수급억제조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축유 방출로 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고 정보제공과 함께 석유소비절약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 규제적수단에 의한 수요억제에 대해서는 비축방출/소비절약요청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신중하게 행한다.

다섯째, 가격개입

석유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상

황에 따라 생산업자/판매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점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그래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발동을 고려한다.

규제에 의한 가격개입에 대해서는 가격상승이 수요를 억제하는 면이 있고 가격규제가 일본에 대한 석유공급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향후의 석유정책은 평시부터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석유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며 긴급시에는 그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비축방안과 활용

긴급시 대응조치로서는 비축유활용이 가장 구체적인 효과로 기대된다.

IEA 회원국은 최저 90일의 비축보유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긴급시에 국가가 조정하여 실제로 방출할 수 있는 비축을 증시하고 있다. 이것은 IEA의 ESS(긴급시 유통체제), 시장밸런스를 회복시키기 위한 CERM(협조적 긴급시 대응조치)등의 발동/실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1975년에 석유비축법을 제정하였고 민간비축을 의무화한 뒤 1978년부터 국가비축을 시작하였다. 현재 IEA 의무비축일인 90일분(5,000만kl)은 국가비축으로 보유하고 있다 (98년2월 현재). 민간비축은 당초 90일분으로 의무화되었으나 93년부터 70일로 줄었다.

긴급시 비축물량 방출에 대해서는 국가비축, 민간비축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방출할 계획이다. 종래 비축 방출은 원유조달/소비절약등의 노력을 다한 후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였으나, 최근에는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비축유를 방출하고 시장과열을 예방하여 안정시키는 CERM의 방식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비축은 비축원유의 방출이 국가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확실히 원유조달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국

가가 직접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큰 발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동성에 있어서는 민간비축보다 열세이나 민간탱크 및 일부에 비축된 원유는 빠르게 방출할 수 있다.

민간비축은 원유와 석유제품을 정유공장과 저유소등지에서 기업의 생산과 유통과정중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원유조달이나 제품수급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반면 긴급시 비축의무량을 떨어뜨려도 실제 방출량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에 원유조달시장의 수급완화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비축방출에 비하여 발표효과는 떨어진다.

이러한 비축방출에 대한 국가비축과 민간비축의 서로 다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비축방출의 이상적 방안>

①최초의 수단으로 국가비축활용

CERM 발동시에는 원유조달시장에 대한 확실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과 아울러 시장에 대한 발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비축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한편 민간비축의 높은 기동성과 탄력성을 고려한다면 일본 독자적으로 비축을 방출하는 경우나 석유기업의 원유조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비축방출의 유효성도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②국가비축방출의 구체적방법

최후수단으로의 국가비축방출등 안정공급을 최우선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기본으로 했으나 CERM대응등 초기단계에서 방출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방출대상자

국내 공급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석유비축의무자중 정제업자 및 계약에 의해 정제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방출절차

수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배려하여 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 국가비축원유의 수출

국내 확보, 투기배제등의 차원에서 국가비축원유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이 석유비축/긴급시대책소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나 검토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비축의 코스트효율화이다. 석유제품수입업자의 비축의무는 소규모수입업자의 참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수입업자의 공동비축방식을 검토해야 된다는 논란이다.

비축보유량에 대해서는 IEA 회원국의 평균수준을 목표로 해야 하고, CERM을 위한 필요량(수백만kl)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의 의욕 고취

석유업법 제1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의 사업활동을 調製하여 석유의 안정적/저렴한 확보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이 전후 경제재건에 주력하는 가운데 GATT나 IMF등은 무역자유화를 강하게 압박했었다. 정부는 1960년에 무역자유화대강을 결정하고 62년10월에는 원유수입도 자유화했다. 석유업법 제정 당시의 국내외석유정제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석유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석유자원은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국제석유시장은 국제석유자본의 세력하에 있어 전통적으로 특수한 가격메카니즘에 지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석유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정제주의방식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의 석유산업은 원유생산부문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유부문의 큰 수익을 배경으로 한 국제석유자본의 영향을 받아 왔다. 국내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외자계기업과 민족계기업이 경쟁상태에 있고 석유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각사는 극심한 세여경쟁을 치르고 있어 석유기업의 체질강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유수입이 자유화된 경우 국제석유자본에 의한 석유시장의 지배를 방지하고 국내석유시장의 일정비율을 국가의 영향아래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석유업계의 과당경쟁을 배제하고 일본석유기업의 건전한 육성에도모하는 것이 석유업법제정의 목적이었다.

석유업법은 다음과 같은 7개항목을 조정하여 석유의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도모했다.

- ① 5년간 석유공급계획 책정
- ② 석유정제업 허가
- ③ 석유정제설비 허가
- ④ 석유제품생산계획 신고
- ⑤ 석유수입업 신고
- ⑥ 석유판매업 신고
- ⑦ 표준가격 설정

석유업법은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을 허가제로 하고 있다. 허가제의 의미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제업의 필수시설인 정제설비건설도 일반에는 금지되어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건설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제이다.

석유제품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생산할 수 있고 정부는 또한 석유공급계획을 책정하여 생산내용도 규제한다. 정제업자는 공급계획이 고시되면 이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통산성에 신고해야 한다. 이 생산계획 신고는 석유업법의 목적에 적혀 있는 정제업의 사업활동조정의 기본이다.

생산계획의 신고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사의 생산계획을 통산성이 취합하여 공급계획에 맞게 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계획을 정한 생산량을 각사에 분배할당하는 식이 된다. 할당은 전기실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사의 생산세어는 고정되어 있다.

통산성이 매년 석유수요를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책정하여 계상된 생산량을 정부가 허가한 정제업자에게 할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비축/긴급시대책소위원회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석유업법의 수요조정규

제」인 것이다. 2001년부터는 동법이 폐지된다. 따라서 공급계획과 생산계획제출도 폐지되며 정제업의 허가나 정제설비허가도 폐지된다.

그러나, 동법 폐지후 통산성은 석유산업의 실정과 석유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에서는 정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등 사업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제설비, 저장시설에 관한 정보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정제업자는 허가제이고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신고제이다.

정제업자의 등록제 여부와 향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될 수입업자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판매업자는 석유업법에서는 소방법제10조제1항의 저장소/취급소/동향의 단서가 규정한 장소에서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자, 5톤이상의 탱크를 보유한 LP가스판매업자, 연간 휘발유 2,400kl, 등유60kl, 경유1,800kl, 중유120kl, LP가스360톤이상을 판매하는 자는 신고가 필요하다. 한편 휘발유품질확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등록제이다. 이들에 각 규정은 기준,등록,신고의 종합적인 정리/통일이 필요할 것이다.

정제설비는 허가제가 폐지되면 정제업자에 등록으로 포함될 것이다. 저장시설은 정제업의 허가신청, 수입업의 신고로 포함되어 석유비축법은 신설을 신고하고 있다.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석유수급전망은 공급계획이 폐지된다고 해도 거시수요구성파악, 비축목표책정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다. 석유업계에는 수요전망 불필요론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는데 문제는 당해년도 1년간을 전망할 것인가와 5년간을 전망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비축법의 비축계획은 5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공급계획폐지로 개선될 전망이다.

수급실적보고는 계속되고 생산계획도 신고제는 폐지되거나 생산동향은 계속 파악한다고 하기 때문에 보고는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석유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느 정도의 정

밀도/빈도/속도로 수집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따라 석유 기업,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업무량과 비용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교체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로서는 향후 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석유업법제정시 정부가 석유시장에 관여하고 민족제기업의 육성을 내걸고 수급조정을 규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자계의 세어를 온존시킨 결과로 작용해 결국 국내외 석유산업의 격동의 와중에 민족계는 오히려 침체되어 왔다.

향후 통산성은 직접규제 대신에 정보를 통하여 거시적

으로 석유업계를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시대책도 결국은 개별 석유기업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이라고 하는 체제는 본래 발전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긴급시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

〈순간석유정책, '99. 6. 25〉

일본의 민간비축/국가비축 현황

	민간비축	국가비축
비축일수 (1998/12월)	82일분	85일분
비축량	4,600만kl (제품환산)	4,750만kl (제품환산) (원유기준 5,000만kl)
보유구성	제품53% 원유100%	원유47%
비축목표	내수의 70일분	5,000만kl (1998년2월달성)
보유장소	정유공장, 저유소등의 민간탱크	국가석유비축기지 민간탱크 (민간으로부터 입차)
보유형태	유통과정에서 보유	봉인방식
관리등 기타	원유, 휘발유, 등유(제트유포함), 경유 및 중유를 유종별로 기준비축량보유. 단, 통상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유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유를 유종별로 구분하고 탱크는 봉인하여 재산관리.

용어해설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은 국가의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매수청구권은 그 동안 없던 제도로 최근 새로 도입했다.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그린벨트에 일부 위헌결정이 나오면서부터다. 즉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이고 현 상태에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개인의 권한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 개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터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매수청구권이 허용됐다.

도시계획은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요청절차도 시·군에 해야 한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절차와 양식을 담은 시행규칙이 뒤따라 마련될 계획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을 봐서 현금으로 매입할 것인지 채권으로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물론 가격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